

# 2022년 4분기 희망퇴직 시행

- 시행 근거: 2018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서 이행(2018.05.25)
- 신청 대상: 6개월 이상 정년 잔여직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
  - '23년 1분기 임금피크제 도래예정자 ('65.12월생~'66.2월생)
  - 중대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
    - 산재승인 이력이 있거나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
    -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어 병원급 진단서 제출자
- ※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가능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
## □ 주요 일정(안)

구분	일정	내용
공고 신청접수	12.12(월)~12.19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시행문서 발송 및 전사 공지(12.12)</li><li>• 접수방법: 부서별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단, 공상/장애는 증명서류* 및 신청사유 제출必</li></ul></li></ul> <p>* 증명서류: 요양·보험급여결정통지서 or 장애인등록증 or 병원급 진단서</p>
인사위원회 심의/확정	12.20(화)~12.23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<u>부서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선발자 확정</u> (단, <u>공상/장애</u>에 대해서는 <u>중앙인사위원회 시행</u>)</li><li>- 공상/장애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심의</li></ul>
업무 인수인계	12.26(월)~12.30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선발자 업무 인수인계 시행</li><li>• 퇴직서류 징구</li></ul>
퇴직발령	2023.1.1자	

※ 전직지원 교육은 정년퇴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퇴직 후 시행(희망자 限)

## [참조] 희망퇴직자 처우

구분	내용
희망 퇴직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보상기준: <u>월기본급*</u> × 산정 월 수 × 지급률</li></ul> <p>* 보수규정 제42조의 피크임금 기준의 월 기본급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산정 월 수 (최대 45개월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정년퇴직일 5년 이내는 잔여월수 매 2월당 1개월</li><li>- 5년 초과 10년까지는 잔여월수 매 4월당 1개월 (최대 45개월)</li></ul></li><li>▶ 지급률(%): <math>100 + [55 - \{(20 / 45) \times \text{산정 월 수}\}]</math></li></ul>
비금전적 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감사선물: 공로패, 여행상품권(150만원), 명예사원증</li><li>• 복지지원: 유무선통신비 보조(1년간 최대 월 3만원), 동우회비 지원(22만원)</li></ul>